

그러면 서울特別市麻浦區道路굴착復舊工事監督業務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여러議員님들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93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麻浦區廳長 提出)

(10時 13分)

○議長 金元泰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3年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의 金裕顯議員님 나오셔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裕顯議員 總務財務委員會의 金裕顯議員입니다. 93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한 審査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件은 93年度 3月 9日 麻浦區廳長이 提出하여 93年 3月 10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우리 委員會에서는 93年 3月 17日 第2次委員會에 上程審査하였습니다.

本件은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取得處分時 議會의 議決을 받기위한 것으로서 本件의 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件은 龍江洞 115-5號의 두필지를 買入하여 老人亭을 건립하는 것이며 賣却件은 玄石洞 106-14號의 3件으로서 占有者 등의 신청에 의하여 賣却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本件의 效率的인 審査를 위하여 總務財務委員 3人이 區廳關係公務員의 案內로 現場踏査를 하였으며 現場踏査 結果報告에서 龍江洞 115-5號는 제출된 도면과 다소의 差異點이 있어 도면을 補完토록 措置하였고 또한 阿規洞 380-78號의 1필지는 立地條件과 豫定價格이 다소 不適合하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措置로 判斷되었고 賣却對象財産 4件은 타당한 措置로 報告되어 審査한 結果 原案可決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元泰 金裕顯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하여 여러議員님들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여러분 이번 臨時會議에서는 93年度 區政業務計劃 聽取 및 當面案件處理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짧은기간의 議事日程속에서도 원만한 議政活動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同僚議員 및 關係公務員여러분에게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第14回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18分 散會)

○出席議員(31人)

金元泰	黃泰植	曹熙太
宋潤錫	金星煥	朴炆緒
李天揆	李鍾萬	李奉衡
具又石	韓賢惠	金鍾烈
沈載昶	孫龍浩	洪性煥
俞南烈	金汶泰	李宗一
鄭然宇	金相烈	李康泌
金東暉	蔡雲錫	尹東鉉
洪吉杓	田炳萬	李仁求
尹正鏞	金裕顯	尹明奎
權五範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朴贊守
市民局長	姜信一
都市整備局長	申水木
建設局長	金永圭
保健所長	孟時仙
總務課長	金石鳳

(參照)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3. 3. 1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2. 26.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3. 3. 4.

다. 상정일자 : 제14회임시회 제2차위원회
('93.3.17)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석봉)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되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3조제1항중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변경 :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기감, 기정, 기좌, 기사등으로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인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등으로 그체계를 일원화함.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3. 2. 2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

원화되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제3조 제1항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정"→"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하고, "지방보건기정"→"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3. 개정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련법규 :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제1항중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소장) ① 보건 소에 소장1인을 두 고, 소장은 지방의 무기정 또는 지방 보건기정으로 보한 다. ② "생 략"	서울특별시마포구 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의무서 기관 또는 지방보 건서기관으로 보한 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3. 3. 17.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3. 3. 마포
구청장 제출